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31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 임오경 · 이연희 · 문대림

장철민 · 서영교 · 전재수

강유정 • 박수현 • 문진석

박상혁 · 임미애 · 한병도

윤준병 • 한민수 • 김남희

박 정 • 윤후덕 • 문정복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 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

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3조제1호나목).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를 "화재·붕괴·지 반침하·폭발·교통사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u>화재·붕괴·</u>	나 <u>화재·붕괴·지</u>
<u>폭발·교통사고</u> (항공사고	<u>반침하·폭발·교통사고</u> -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	
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	
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먼지, 「우주개발 진흥	
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	
한 피해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